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을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호 중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3호 중 “법 제50조의2”를 “법 제50조의2 및 제54조의2”로 한다.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 학과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4.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원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3.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 취득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의 입학·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④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체

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4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2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원격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2년 이상. 다만,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4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2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2023년 1월 1일

별표 2의2 및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2] 원격대학 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62조의2제1항 관련)

기준	항 목	확보율
대학 전체	전임교원확보율	100
	교사확보율	100
모집 단위	전임교원확보율	50
	교원확보율(전임·겸임·초빙교원 포함)	80

비고

1.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3의2] 원격대학 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제62조의3제2항 관련)

기준	항 목	확보율
대학 전체	전임교원확보율	100
	교사확보율	100
모집 단위	전임교원확보율	60
	교원확보율 (전임·겸임·초빙교원 포함)	100

비고

1.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모집단위의 교사기준면적은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 비고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4 차목 2)중 “위반하여”를 “위반한 경우”로 한다.

별표4 차목 3)중 “미만인 경우”를 “미만인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로 한다.

별표4 너목 중 “학위심화과정”을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학위심화과정”으

로 한다.

별표4 너목 1) 중 “제58조의2제1항”을 “제58조의2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별표 2”를 “별표 2 및 별표 2의2”로 한다.

별표4 너목 2) 중 “제58조의2제4항”을 “제58조의2제4항 및 제62조의2제4항”으로, “법 제50조의2제5항”을 “법 제50조의2제5항 및 제54조의2제5항”으로 하고, “전문대학이”를 “전문대학과 원격대학이 각각”으로 하며, “별표 3”을 “별표 3 및 별표 3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생 략) 1. (생 략) 2. 원격대학: <u>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u> 3~4. (생 략)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격대학: <u>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u> 3~4.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생 략) 1~2. (생 략) 3. 원격대학: <u>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u> 4. (생 략)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원격대학: <u>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u> 4. (현행과 같음)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12조의2. (생 략)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14~16. (생 략)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12조의2. (현행과 같음) 13. 법 제50조의2 및 제54조의2 ----- ----- 14~1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u>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u>) ① <u>전문학사학</u>

현행	개정안
	<u>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개설 학과</u> <u>2. 수업연한</u> <u>3. 모집인원</u> <u>4.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u> <u>5. 교육과정 운영계획</u> <u>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u> <u>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u> <u>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개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원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

현행	개정안
	1. <u>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u> 2. <u>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u> 3. <u>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 취득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 인정과정의 입학·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u> 4. <u>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u> ④ <u>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 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4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 설>	제62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원격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2년 이상. 다만,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

현행	개정안													
	<u>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u>													
제74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② (생략) 1~6. (생략) <신설> 7~8. (생략)	제74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u>6의2. 제62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2023년 1월 1일</u> 7~8. (현행과 같음)													
<신설>	<u>[별표 2의2] 원격대학 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62조의2제1항 관련)</u> <table><tr><th>기준</th><th>항목</th><th>확보율</th></tr><tr><td rowspan="2">대학 전체</td><td>전임교원 확보율</td><td>100</td></tr><tr><td>교사 확보율</td><td>100</td></tr><tr><td rowspan="2">모집 단위</td><td>전임교원 확보율</td><td>50</td></tr><tr><td>교원 확보율(전임·겸임·초빙교원 포함)</td><td>80</td></tr></table> <u>비고</u> <u>1. 교사 확보율 및 교원 확보율은 각각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u>	기준	항목	확보율	대학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	100	교사 확보율	100	모집 단위	전임교원 확보율	50	교원 확보율(전임·겸임·초빙교원 포함)	80
기준	항목	확보율												
대학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	100												
	교사 확보율	100												
모집 단위	전임교원 확보율	50												
	교원 확보율(전임·겸임·초빙교원 포함)	80												
<신설>	<u>[별표 3의2] 원격대학 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제62조의3제2항 관련)</u>													

현행	개정안													
	<table><tr><th>기준</th><th>항 목</th><th>확보율</th></tr><tr><td rowspan="2">대학 전체</td><td>전임교원확보율</td><td>100</td></tr><tr><td>교사확보율</td><td>100</td></tr><tr><td rowspan="2">모집 단위</td><td>전임교원확보율</td><td>60</td></tr><tr><td>교원확보율 (전임·겸임·초빙교 원 포함)</td><td>100</td></tr></table> <u>비고</u> 1. <u>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가능한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모집단위의 교사기준면적은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 비고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의 기준을 적용한다.</u>	기준	항 목	확보율	대학 전체	전임교원확보율	100	교사확보율	100	모집 단위	전임교원확보율	60	교원확보율 (전임·겸임·초빙교 원 포함)	100
기준	항 목	확보율												
대학 전체	전임교원확보율	100												
	교사확보율	100												
모집 단위	전임교원확보율	60												
	교원확보율 (전임·겸임·초빙교 원 포함)	100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 차.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이 목에서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u>[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u> 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단서를 <u>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u>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u>경우</u>	2) ----- ----- ----- <u>위반한 경우</u> 3) ----- ----- ----- ----- <u>경우와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u>
너. 학위심화과정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학위심화과정 설치 시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너. <u>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u> 학위심화과정에----- ----- 1) 제58조의2제1항 및 <u>제62조의2제1항</u>을 위반하여 학위심화과정 설치 시 별표 2 및 <u>별표 2의2</u>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행	개정안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문대학이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58조의2제4항 <u>및 제62조의2제4항</u>을 위반하여 법 제50조의2제5항 <u>및 제54조의2제5항</u>에 따른 지정을 받은 <u>전문대학과 원격대학이 각각</u> 별표 3 <u>및 별표 3의2</u>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연 락 처	(044) 203 - 6368, 6369